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나6890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나68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274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재원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변론종결 2021. 9. 17.

판결선고 2021. 10.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2740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14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채광, 판사 석준협, 판사 권양희

별지